민방위 교육훈련(동원) [] 유 예 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신 청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
	주 소	
	소 속	전 화
훈련(동원)면제	면제 유예기간	훈련(동원)장소
	면제 • 유예사유	

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장 귀하

구분	대상자(해당란에 ∨표시)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
유예	[]신체장애인	의사의 진단서	없음	
	[]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	통장・이장의 확인서	없음	
	[]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자	관계 기관장의 확인서	없음	
면제	[]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	교도소장의 재소증명	없음	수수료 없음
	[]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 류 중인 자	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
	[]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 지자	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 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없음	
	[]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	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없음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(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제2호).
-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(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제3호).

처리절차

- •유예 교육훈련: 신청인 → 민방위 대장(경유) → 읍•면•동(통•리 대원) → 시•군•구(직장•기술지원대원) 동 원: 신청인 → 민방위 대장(경유) → 읍•면•동
- ・면제: 신청인 → 민방위 대장(경유) → 읍・면・동(통・리 대원)

